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51조)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신설, 제35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 성 규

◉법률 제138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승인”을 “승인 및 취소”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3.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4.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5.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6.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 중 "제23조"를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사용승인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

나.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다.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원장을,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함(제48조).

라. 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 성 규

◉법률 제138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5)제2항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